

1. 여성장애인에 대하여

☐ 총칙의 제4조(차별금지)에 넣으려니 여성장애인만의 고유성을 넣으려니 한 두 조항으로 포괄하기 미흡하다는 의결에 따라,
총칙 속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였으면 합니다.

☐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4조 차별금지

제5조 자기결정권과 선택권

제6조 여성장애인의 권리

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

☐ 제6조(여성장애인의 권리)

① 여성장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. 특히 의료(교육, 고용)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에의 동등한 접근권을 갖고, 성적 인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장애를 가진 여아, 청소년, 노인 등의 장애를 가진 여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겪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③ 장애와 여성 관련 정책, 통계,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이 고려되지 않거나,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④ 장애를 가진 여성의 임신, 출산, 양육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하거나,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

2. 제36조 1호/ 제38조 2호

제36조 1호를 삭제하고,

제38조 2호를 “ 장애를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피임, 불임시술 및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는 경우”로 수정.

3. 제2장 각 절의 보완 사항

제1절 고용

제10조

10.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 정책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,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우하는 경우

제2절 교육

제12조

① 학교의 장은 장애인의 성별에 따라 본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장애평등권

제5항 수정 요망

“학교는 취업과 진로교육 및 정보제공에 있어서...”

제6절 재화와 용역...

제25조(...차별금지)

①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자는 그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26조(차별행위)

5. 용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동성(同性)의 서비스가 요구됨에도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성(異性)의 서비스를 배치하고 강요하는 경우

